

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초현학원 이사장 귀하

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초현학원이 설치·경영하는 이일여자고등학교 2019학년도(2019. 3. 01~2020. 2. 29)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.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, 그 회계처리도 적정하였음을 보고 합니다.

2020년 4월 2일

학 교 법 인 초 현 학 원

감사 송원기



감사 이경모



입회인소속 : 이일여자고등학교      직: 행정실장

성명 : 이일수 (인)

